

1 정관 개정

기존	개정(안)	비고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정관		
제23조(소재지) 법인의 <u>임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향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u>	제23조(소재지) 법인의 <u>주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라 한다)에 두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 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u>	
제7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u>광주광역시장</u> 2. <u>전라남도지사</u> 3. <u>한국학호남진흥원장</u> 4. <u>광주광역시·전라남도(이하 ‘시·도’ 라 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리·감독 부서 실·국장</u> ③ 선임직 이사는 <u>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 라 한다)가 공동명의로 임명한다.</u> ④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⑥ 당연직 감사는 <u>이사장을 맡지 않은</u>	제7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u>통합특별시장</u> 2. <u>한국학호남진흥원장</u> 3. <u>통합특별시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리·감독 부서 본부장</u> ③ <u>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u> <u>이 임명한다.</u> ④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⑥ 당연직 감사는 <u>통합특별시 진흥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u>	

기존	개정(안)	비고
시·도 진흥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선임직 감사는 이사장을 맡은 시·도에서 선임하는 공인회계사로 한다. ⑦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u>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u> ⑦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⑧ 제3항, 제6항의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제11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광주광역시장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u>통합특별시장</u>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는 원장과 원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u>통합특별시장</u>은 원장과 원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원장의 선임)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이를 위해 시·도 및 광주광역시 의회·전라남도 의회(이하 ‘시·도의회’라 한다)에서 같은 수로 추천한 위원을 합하여 10명 이내로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13조(원장의 선임)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u>통합특별시장</u>이 임명한다. ② 이를 위해 <u>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의 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합하여 7명 이내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복수로 통합특별시장에 게 추천한다.</u> ③ (삭제)	

기존	개정(안)	비고
③ 이사회는 복수 추천자에 대해 의결을 거쳐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단,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원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원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예산편성)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시장·도지사</u>에게 제출하고, <u>검사·감독권</u>을 가진 <u>시장</u> 또는 <u>도지사</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예산편성)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통합특별시장</u>에게 제출하고, <u>통합특별시장</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u>2개월</u>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시장·도지사</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u>시장·도지사</u>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u>3개월</u>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통합특별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u>통합특별시장</u>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u>광주광역시·전라남도</u>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5.03.21.>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u>통합특별시</u>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5.03.21.>	
제41조(공무원 겸임 및 파견) ① 원장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u>시장·도지사</u>에게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겸임 및 파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해당 직위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 직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공무원 겸임 및 파견) ① 원장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u>통합특별시장</u>에게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겸임 및 파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해당 직위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 직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기존	개정(안)	비고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출연·보조한 비율에 따라 시·도로 귀속한다.</u>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통합특별시로</u> 귀속한다.	
제46조(검사감독 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u>시·도의 검사감독</u> 을 받되, 검사 감독권은 <u>시·도가 2년씩 순차적으로 갖는다.</u> 1. 수입·지출 예산 편성 및 결산 2. 한국학 호남진흥원 종합감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46조(검사감독 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u>통합특별시의 검사감독을 받는다.</u> 1. 수입·지출 예산 편성 및 결산 2. 한국학 호남진흥원 종합감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부 칙 ① 이 정관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인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일 전에 행할 수 있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u>시·도의 법인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u>	부 칙 ① 이 정관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인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일 전에 행할 수 있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u>통합특별시의 법인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u>	
(신설)	<u>부 칙(2026. 00. 00.)</u> <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초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선임은 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에 따른다.</u>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기존				개정(안)				비고
재산목록				재산목록				
구 분	재 산 명	금 액(원)	비 고	구 분	재 산 명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u>3억원(광주)</u> <u>3억원(전남)</u>		기본재산	현 금	<u>6억원(전남</u> <u>광주통합특</u> <u>별시)</u>		
합	계	6억원		합	계	6억원		

② 원장선임규정 개정

기존	개정(안)	비고
<u>원장선임규정</u>	<u>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u>제7조 제8항, 제13조 제4항에 따라</u>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 <u>임원 선임</u>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원장 선임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신설)	제2조(적용 범위) ① <u>임원 선임에 관하여 법령,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u> ② <u>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원장,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를 말한다.</u>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u>원장후보추천위원회</u> (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5.03.21.> ② 위원회는 임원 임기 만료의 경우는 임기 만료 90일 이전에, 기타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직후 지체 없이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 기간과 같다. ④ 위원회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의 장(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 추천하는 자 각2인 총4인 2. 주무관청의 의회(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1인 총2인 3. (신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행정 또는 경영전문가 2. 교육·문화·학술 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기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위원회 구성) ① <u>임원</u> 선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u>임원추천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5.03.21.> ② <u>호남진흥원은</u> 임원 임기 만료의 경우는 임기 만료 <u>2개월</u> 이전에, 기타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직후 지체 없이 <u>위원회를 구성한다.</u> ③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u>통합특별시장</u> 이 추천하는 자 2인 2. <u>통합특별시의회</u> 가 추천하는 자 3인 3. <u>호남진흥원 이사회</u> 가 추천하는 자 2인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행정 또는 경영전문가 2. 교육·문화·학술 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기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기존	개정(안)	비고
⑥ (신설)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u>호남진흥원의 임원·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u>) 및 <u>통합특별시의 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을 포함한다)</u> 은 <u>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	
제4조(기능) <u>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원장 후보자의 심사 또는 추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03.21.></u>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제4조(기능) <u>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임원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u> 2. <u>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자 심사</u> 3. <u>원장 후보자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u> 4. <u>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 후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u> 5. <u>기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u>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이전에 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u>3분의 2 이상의</u>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재상정의 시기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하되,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이전에 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u>과반수의</u>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재상정의 시기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하되,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8조(공개 모집) ① <u>원장</u> 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u>원장</u> 의 연임 시에는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모집 및 공고기간은 <u>20일 이상</u> 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개모집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호남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제8조(공개 모집) ① <u>임원</u> 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u>임원 중 원장</u> 의 연임 시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모집 및 공고기간은 <u>15일 이상</u> 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개모집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호남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존	개정(안)	비고
전국 또는 주무관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⑤ <u>원장 후보자의 공개 모집 공고는 원장의 임기만료 7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u>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개정 2025.03.21.> 1.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2. <u>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u> 3. 임명권자가 <u>원장</u>으로 추천된 후보가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⑦ <u>(신설)</u>	전국 또는 주무관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⑤ <u>(삭제)</u>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개정 2025.03.21.> 1.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2. <u>위원회의</u>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u>임원</u>으로 추천된 후보가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u>통합 특별시장</u>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⑦ <u>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해야 한다.</u>	
제9조(제출 서류) <u>원장</u> 후보에 응모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표 3] 2. 직무수행계획서[별표 4] 3. 자기 소개서[별표 5]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9조(제출 서류) <u>임원</u> 후보에 응모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u>단, 비상임 선임직 임원은 2호에서 5호를 생략할 수 있다.</u> 1. 지원서[별표 3] 2. 직무수행계획서[별표 4] 3. 자기 소개서[별표 5]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원장</u>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5.03.21.>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5.03.21.>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임원</u>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5.03.21.>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5.03.21.>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기존	개정(안)	비고
<개정 2023.12.22.> 제11조(심사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후보자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한국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 2.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3. 기타 <u>원장</u>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개정 2023.12.22.> 제11조(심사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후보자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한국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 2.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3. 기타 <u>임원</u>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제12조(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제11조 원장 후보자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② <u>원장</u> 후보자의 선정은 [별표 1]을 활용한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별표 2]를 활용한 면접 심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u>원장</u> 후보자 선정 심사방법,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② <u>임원</u> 후보자의 선정은 [별표 1]을 활용한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별표 2]를 활용한 면접 심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u>임원</u> 후보자 선정 심사방법,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원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u>원장</u> 임기 만료 40일 이전까지 원장 후보자 2배수 이상을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가운데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원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13조(<u>임원</u> 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u>임원 후보자 2배수 이상을 무순위로 통합 특별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u> ②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가운데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u>통합특별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개정(안)	비고
제14조(원장 선임) 이사회는 위원회로부터 <u>원장</u> 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지체없이 심의에 착수하여 원장 임기 만료 20일 이전까지 선임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원장 선임) (삭제)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이 사항을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u>원장</u>후보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5.03.21.> ③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다.<신설 2025.03.21.> ④ 위원은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5.03.21.>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며, 이 사항을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3.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u>임원</u>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u>임원</u>후보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5.03.21.> ③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다.<신설 2025.03.21.> ④ 위원은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5.03.21.>	

[별표 개정(안)]

[별표 1] 서류심사 평가표 <신설 2023.12.22.>

(원장)서류심사 평가표(안)

○ 후보자 성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한국학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20점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0점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외관계 능력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서명)

[선임직 이사·감사]서류심사 평가표(안)

○ 후보자 성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한국학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20점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의지와 추진력	20점					
재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공익성과 윤리관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서명)

면접심사 평가표

○ 후보자 성명 :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한국학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5	4	3	2	1	/20
	2.한국학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5	4	3	2	1	
	3.한국학 분야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5	4	3	2	1	
	4.한국학 분야 연구목표와 향후계획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술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위기 대처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의지	5	4	3	2	1	/20
	2.조직문화 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능력	5	4	3	2	1	
조직 관리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 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 능력	5	4	3	2	1	
윤리관 (20)	1.공익을 우선하는 직무 인식	5	4	3	2	1	/2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3.조직운영에 관한 원칙과 철학	5	4	3	2	1	
	4.대인관계, 자기관리 능력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서명)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원장·이사·감사		응시번호		※ 접수 시 부여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1900년 0월 0일 (만 세)					
	주소						
	전화	[주택]() - [직장]() -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취득학위	비고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개정

기존				개정(안)				비고																																				
기획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u>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호남진흥원 운영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⑤ 위원중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나 원내 부서장인 경우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 까지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u>통합특별시의 호남진흥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⑤ 위원중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나 원내 부서장인 경우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 까지로 한다.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정·개정·폐지권자) 원규의 제정·개정·폐지권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3.21.> 1. 정관 및 규정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써 제정·개폐한다. 다만,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주무관청인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승인</u> 을 얻어야 한다. 2. 세칙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개폐한다. 3. 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개폐한다.					제8조(제정·개정·폐지권자) 원규의 제정·개정·폐지권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3.21.> 1. 정관 및 규정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써 제정·개폐한다. 다만,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u>통합특별시의 승인</u> 을 얻어야 한다. 2. 세칙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개폐한다. 3. 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개폐한다.																																							
감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연간감사결과보고서 1. 중 합					[별지 제3호 서식] 연간감사결과보고서 1. 중 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th><th rowspan="2">시행연월일 (실시기간)</th><th rowspan="2">실적 대상부서수</th><th colspan="6">행정상 조치</th></tr><tr><th>정</th><th>시</th><th>개</th><th>주</th><th>기</th><th>타</th><th>계</th></tr></table>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시행연월일 (실시기간)	실적 대상부서수	행정상 조치						정	시	개	주	기	타	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th><th rowspan="2">시행연월일 (실시기간)</th><th rowspan="2">실적 대상부서수</th><th colspan="6">행정상 조치</th></tr><tr><th>정</th><th>시</th><th>개</th><th>주</th><th>기</th><th>타</th><th>계</th></tr></table>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시행연월일 (실시기간)	실적 대상부서수	행정상 조치						정	시	개	주	기	타	계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시행연월일 (실시기간)	실적 대상부서수	행정상 조치																																								
				정	시	개	주	기	타	계																																		
구분	감사종별 또는 감사기관	시행연월일 (실시기간)	실적 대상부서수	행정상 조치																																								
				정	시	개	주	기	타	계																																		

내부감사

일반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직무감찰

소 계(A)

-

외부감사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기타

소 계(B)

-

합 계(A+B)

내부감사

일반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직무감찰

소 계(A)

-

외부감사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의회

기타

소 계(B)

-

합 계(A+B)

자료관리규정

제27조(기증·기탁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2019. 9. 18.> ① 기증 및 기탁을 의뢰받은 자료의 출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기증기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03.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자료교육부장이 된다.<개정 2025.03.21.>

③ 위원은 간사를 제외한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5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교육·문화학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기증기탁을 의뢰받은 경우 및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03.21.>

제27조(기증·기탁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2019. 9. 18.> ① 기증 및 기탁을 의뢰받은 자료의 출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기증기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03.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자료교육부장이 된다.<개정 2025.03.21.>

③ 위원은 간사를 제외한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의 5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교육·문화학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기증기탁을 의뢰받은 경우 및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03.21.>

기존	개정(안)	비고
인사규정		
제36조의3(합격자 결정) <신설 2023.12.22.> ① 신규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로 필기시험 60%, 면접심사 40%를 반영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신규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최고 점수부터 차례로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 한다. <u>시·도</u> 주관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참여(위탁)한다.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의 2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6조의3(합격자 결정) <신설 2023.12.22.> ① 신규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로 필기시험 60%, 면접심사 40%를 반영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신규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최고 점수부터 차례로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 한다. <u>통합특별시</u> 주관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참여(위탁)한다.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2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회계규정		
제4조(회계연도) 호남진흥원의 회계연도는 <u>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회계연도</u>에 따른다.<개정 2025.03.21.> 제19조(예산의 편성) ① 정기이사회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총무부장은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3.21.>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③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03.21.>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 이월사업조서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제4조(회계연도) 호남진흥원의 회계연도는 <u>통합특별시의 회계연도</u>에 따른다.<개정 2025.03.21.> 제19조(예산의 편성) ① 정기이사회 심의가 끝났을 때에는 <u>회계 담당 부서장</u>은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3.21.>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③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03.21.>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 이월사업조서	

기존	개정(안)	비고
4.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④ 총무부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u>광주광역시 시장·전라남도 도지사</u>(이하 “시장·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5.03.21.> ⑤ 제1항의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까지 확정되어야 한다.<신설 2025.03.21.>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4.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④ <u>회계 담당 부서장</u>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u>통합특별시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5.03.21.> ⑤ 제1항의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까지 확정되어야 한다.<신설 2025.03.21.>	

4] 규정 내 용어 명확화 및 단순 오타 수정

기존	개정(안)	비고
직원보수규정		
제27조(관리업무 수당) ① 부서장 이상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급여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27조(관리업무 수당) ① 부서장 이상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월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자산 및 물품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3.21.> 1.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을 말한다. 가. (생략) 나. 동산이라 함은 모양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물(전산화시설, 시청 각기재, 기계시설, 수목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3.21.> 1.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저작권 및 판권을 말한다. 가. (생략) 나. 동산이라 함은 모양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물(전산화시설, 시청각 기자재, 기계시설, 수목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① (생략) ② 관리책임자의 명을 받아 본 회계는 회계과장, 특별회계는 담당 실·과장(이하 '운용책임자' 라 한다)이 소관 자산 및 물품관리와 운영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③ (생략)	제4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① (생략) ② 관리책임자의 명을 받아 일반회계는 회계 담당 부서장, 특별회계는 담당 부서장(이하 '운용책임자' 라 한다)이 소관 자산 및 물품관리와 운영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③ (생략)	
제30조의2(업무 외 사용금지 등)<신설 2026.03.31.> ① 공용차량은 업무 외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u>공무용</u>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의2(업무 외 사용금지 등)<신설 2026.03.31.> ① 공용차량은 업무 외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u>공용</u>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7조(일상점검 및 장비) (생략) ④ 제3항의 정비사업소의 지정은 사무국장이 하고, 정비의뢰 여부 판단은 <u>총무과</u> 장이 한다.	제37조(일상점검 및 장비) (생략) ④ 제3항의 정비사업소의 지정은 사무국장이 하고, 정비의뢰 여부 판단은 <u>회계 담당 부서장</u> 이 한다.	

기존	개정(안)	비고
제55조(변상) 손망실책임자는 제49조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제52조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명령서에 지정한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5조(변상) 손망실책임자는 제50조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제52조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명령서에 지정한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시설관리규정		
제2조(다른 규정과의 범위) 시설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호남진흥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은 호남진흥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생략)	
제4조(시설의 관리책임) 시설의 관리 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장이 관장하고, 시설사용 부서의 장(실·과장)이 사용책임자가 된다.	제4조(시설의 관리책임) 시설의 관리 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업무는 시설관리 담당 부서장이 관장하고, 시설사용 부서의 장(삭제)이 사용책임자가 된다.	
제9조(안전관리) ① 총무부장은 전기·기계 등 취급상 위험한 설비의 유지보수에 있어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시설관리 담당 부서장은 전기·기계 등 취급상 위험한 설비의 유지보수에 있어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 및 이용대상) (생략) ② 호남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사용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 및 이용대상) (생략) ② 호남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생략) 위와 같이 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생략)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학호남진흥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한국학호남진흥원 전기안전관	

기존	개정(안)	비고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시설물 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함) 및 모든 구성원(직원)은 전기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의무) 시설물 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함) 및 모든 구성원(직원)은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치업무)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된 본 규정을 시설물(근무지)내 전기설비설치 장소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비치업무)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된 본 규정을 시설물(근무지)내 전기설비설치 장소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자로서 안전 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말하며, 안전 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토목 안전관리자 및 기계안전 관리자를 말하고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안전관리보조원과 기계 안전 관리보조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자로서 안전 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말하며, 안전 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토목안전관리자 및 기계안전 관리자를 말하고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안전관리보조원과 기계 안전관리보조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행하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직무대행자 지정) ① 전기안전 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 제7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직무대행자 지정) ① 전기안전 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안전관리 교육) ① 전기안전관	제14조(안전관리 교육) ① 전기안전관	

기존	개정(안)	비고
리자는 연도마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u>당</u> 근무지에 필요한 교육의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권자(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리자는 연도마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u>해당</u> 근무지에 필요한 교육의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권자(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u>당</u> 근무지 전체의 업무협조 및 <u>조정등과</u> 관련하여 <u>결정권자(원장)</u> 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7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u>해당</u> 근무지 전체의 업무협조 및 <u>조정 등과</u> 관련하여 <u>원장</u> 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정밀점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해 년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정밀점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해 <u>연 1회</u>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하 생략)	
(없음)	<u>제25조(기록의 보존기간) 제24조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간은 관계 법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u>	
제27조(안전관리 책임) ① 전기안전관리의 책임한계는 <u>제6조 5항 “가”호</u> “전기수용설비”와 같이 콘센트까지 이며, 동력 기기는 분전함 차단기 2차측 접속 <u>단자 까지로</u> 한다. (이하 생략)	제27조(안전관리 책임) ① 전기안전관리의 책임한계는 <u>제6조 제5호 가목의</u> “전기수용설비”와 같이 콘센트까지 이며, 동력 기기는 분전함 차단기 2차측 접속 <u>단자까지로</u> 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기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u>한국전력기술인협회</u> 등에 제출한 신고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항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기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u>한국전기기술인협회</u> 등에 제출한 신고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항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서식의 준용) 전기안전관리 규정과 관련된 서식은 「 <u>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u> 」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32조(관련서식의 준용) 전기안전관리 규정과 관련된 서식은 「 <u>전기안전관리법</u> 」의 서식을 준용한다.	

4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기존	개정(안)	비고
인권경영 운영 세칙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u>헌법</u>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u>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 <u>대한민국헌법</u> 」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u>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u>	
③ “이해관계자”란 호남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 계약자, <u>주역주민</u> 등 호남진흥원과 관계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③ “이해관계자”란 호남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 계약자, <u>지역주민</u> 등 호남진흥원과 관계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인권경영 계획 수립) 호남진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관부서) (생 략)	제5조(주관부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한다.	
제6조(인권교육) <u>인권경영</u>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련 <u>집합교육을 년 1회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수시교육, 교재</u>	제6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련 <u>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u>	

기존	개정(안)	비고
<u>등으로 보강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u>		
<신 설>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교육일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① 주관부서는 협력사,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현장점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6조(인권침해 구제절차) <신 설>	제26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호남진흥원은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인권신고센터는 신분 보호, 비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면접수 외에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u>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담당자)에 “별지 제2호</u>	<u>②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권신고센터</u>	

기존	개정(안)	비고
<u>서식”에 의거 신고 할 수 있다.</u>	<u>에 신고할 수 있다.</u>	
② 신고는 방문접수 외에도 팩스, 이메일(사내 메일 포함)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신고센터는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행위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인권경영 선언문 (생략) 하나, 우리는 <u>시·도민</u> 등 모두가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문화를 즐길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u>시·도민</u>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인권경영 선언문 (생략) 하나, 우리는 <u>지역주민</u> 등 모두가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문화를 즐길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u>지역주민</u>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기존	개정(안)	비고
신 고 서 (생략) <u>광주광역시·전라남도</u> 인권옴부즈맨 등 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하 생략)	신 고 서 (생략)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인권옴부즈맨 등 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하 생략)	